



공공건축 가이드 0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가이드 2022

공공건축 가이드 0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가이드 2022

여는 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가이드 2022

공공건축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복지, 교육, 여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 공공건축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양질의 생활을 뒷받침합니다.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용도별 사업계획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좋은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공공건축 가이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로 펴내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2022’는 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담당자, 심의안건 사업 담당자,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발간물로 도입취지 및 배경, 기능, 구성 및 주체별 역할, 운영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가이드’ 시리즈가 공공건축의 합리적인 사업 준비와 기획,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바탕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좋은 공공건축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차례

Contents

●	들어가며	
○	가이드 제공 목적	06
○	주요 독자	06
I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기능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운영원칙	09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업무 내용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10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및 대상	1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능 및 대상	16
II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체별 역할	
	심의위원 구성 기준	21
	주체별 역할	27
III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운영	33
	개최주기 및 방식	33
	심의내용	35
	심의절차(안)	36
	심의위원 심의 진행 시 제척 · 회피 사유	40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운영	42
	개최주기 및 방식	42
	자문절차(안)	43
○	부록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현황	47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구성(안)	55
	3. 관련 서식(안)	61

들어가며

가이드 제공 목적

본 가이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반적인 사안을 정리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본 가이드를 통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주체별 역할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주요 독자

본 가이드는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 및 담당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담당자, 심의안건 사업 담당자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공공건축 가이드 04

I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기능



본 장에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도입취지를 비롯해 건축기획 단계의 유관기능별 역할 및 관계를 소개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기능과 대상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공공건축 조성과정 중 기획단계에 해당하는 기능이며, 자문은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기획-사업계획 사전검토-건축기획 심의-설계용역 입찰공고로 정리 가능한 공공건축 조성 기획단계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시공단계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운영원칙

도입취지 및 배경

공공건축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무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공공건축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특색 없는 디자인으로 지어져 공공건축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것은 공공건축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개략적인 사업비, 규모, 프로그램 등만 포함된 획일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서 일부 기인한다.

이에 2018년 12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어, 건축기획을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설계 전에 수립하는 사전전략으로 정의하고,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법 제22조의3이 신설되어 건축기획에 대한 심의 또는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관해 자문을 할 수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공공기관에 두도록 하였다.

운영 원칙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담보할 수 있는 심의 또는 자문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공공건축 사업 특성상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리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해야 하며, 기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여건에 맞춰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기관의 특성을 살려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업무 내용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A 건축기획

-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사업 특성과 무관한 유사 사례 건축기획 내용이 그대로 답습되거나 회일적인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는 등 공공건축의 건축기획이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8년 12월 18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축기획 개념이 법제화 되었고, 2019년 12월 19일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건축기획은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 전에 사업 필요성, 공간구성 등에 대한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것
- 건축기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0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의무사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상략)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후략)

B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의무사항

①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 유사시설 ·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4. 향후 시설 운영 · 활용 계획
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후략)

-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건축기획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를 요청해야 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의무사항

(상략)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후략)

C

공공건축 기획 심의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이후,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건축기획 내용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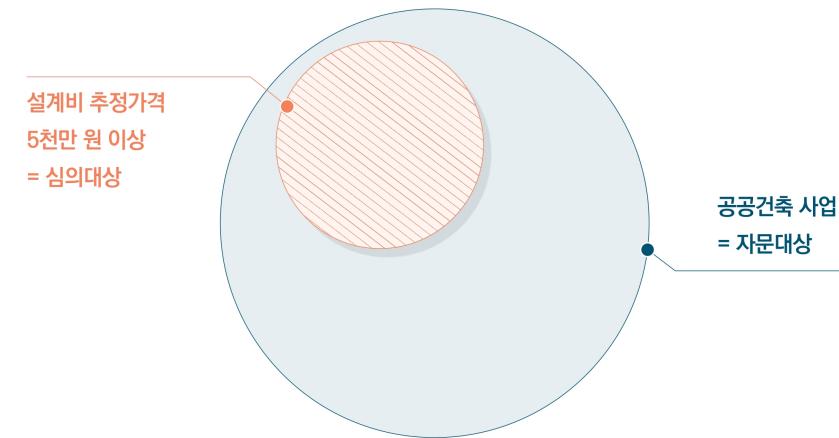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의무사항

(상략)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후략)



※ 공공건축 사업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사업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및 대상

심의 기능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및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을 통해 규정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 수행
 -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 설계지침서 적정성과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
 - 사전검토를 받은 사업의 경우(사전검토 재검토 사업 포함) :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 사전검토 제외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사업의 경우 : 조사 결과 반영 및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의무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상략)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략)

의무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후략)

심의 대상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의무사항

(상략)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후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의무사항

(상략)

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후략)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능 및 대상

자문 기능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의해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가능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 기능은 공공건축 사업 조성 전 과정에서 필요 시 이루 어질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건축정책, 제도개선 관련 자문도 가능하도록 운영 규정을 통해 정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제1항에 의해 설계공모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추천할 수 있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의무사항

(상략)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시행 2021.8.1.)」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의무사항

① 발주기관들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도, 규모, 특성,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

2.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전문기관

5. 제11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후략)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시행 2021.5.14.)」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참고사항

(상략)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와 관련된 사항

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구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시행 2020.8.5.)」 제2조(기능)**참고사항**

(상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설계공모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 공사비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경상북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시행 2020.1.13.)」 제2조(기능)**참고사항**

(상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설계공모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 공사비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 다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기관 내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시 자문 기능에 대한 적절한 역할 분배 후 운영할 것을 권장함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수행 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간소화 대상

- 기획단계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수행한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간소화 대상이 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을 참고할 것(단,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검토 대상 사업에 한함)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제14조(사전검토 수행 지침)**참고사항**

- ① 사전검토 전문가는 「별첨 1」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목표에 따른 건축디자인 방향의 적정성, 이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관리체계의 실효성 및 예산계획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다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사업의 경우 공공건축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견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후략)

자문 대상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 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
 - * 설계비 추정 가격 및 용도와 관계 없이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 사업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공공건축 가이드 0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체별 역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을
따라야 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기관별 여건에 따라 운영주체에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른 설치
목적 및 취지, 기능을 이해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운영부서(전담자)가 부재한 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등이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심의위원 구성 기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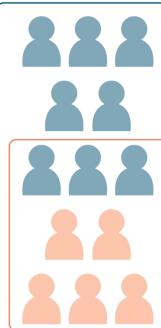
-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총 인원 구성 필요

의무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중략)
- 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략)

재적위원
(5인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시
개의

성별 비율

-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

참고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상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후략)

내부위원 비율

- 심의위원 중 내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0%이하로 구성
 - * 내부위원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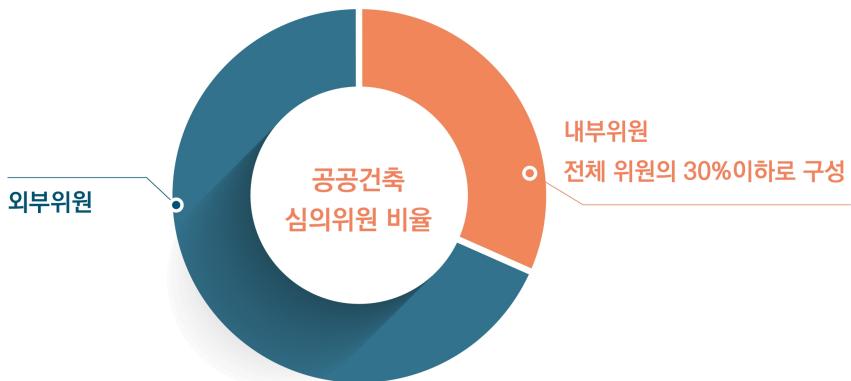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의무사항

(상략)
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6. 28.〉

(중략)
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후략)



자격기준

-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 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 산정 시 위에서 규정한 자격·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
- 대행 가능 위원회(「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건축법」에 따른 중앙·지방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경우 심의위원 자격기준은 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함

전문분야

-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심의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도시, 조경 분야 외 전문가 필요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 구성하기보다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 받을 것을 권장함

의무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상략)

- 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6. 28.〉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 제3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후략)

임기

-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의무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상략)

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후략)

- 심의위원 중 내부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등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장함

참고사항

「경상북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시행 2020.1.13.)」 제4조(위원의 임기·공개)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제3조(위원의 자격과 구성 등)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대학교, 단체 등) 장의 추천을 받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분야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별 운영규정에 명시할 것을 권장함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시행 2020. 8.)」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4.2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 하되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단, 법 제22조의3 ①항 2호에 의거 구성될 경우,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임기를 따른다.

참고사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20.5.27.)」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보궐임기에 대해서도 필요시 기관별 운영규정에 명시할 것을 권장함

참고사항

「구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시행 2020.8.5.)」 제4조(위원의 임기·공개)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장

- 심의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

의무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상략)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후략)



대행 가능 위원회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의
경우

-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 · 도지
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무사항

-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
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후략)





주체별 역할

별도의 운영부서 (전담자)가 있는 경우

운영부서(전담자)의 역할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모집, 구성 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운영규정 작성 및 배포, 개정 등
- 심의 및 자문 필요 시 회의 개최*
 - * 심의 개최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 개최 시 사업담당자에게 자료 작성 요청 및 취합, 심의위원에게 배포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필요 시 녹음 또는 녹화
- 심의 개최 시 심의 의견서, 심의 의견서, 조치 결과서 보관 및 이행현황 지속적 관리
- 자문 개최 시 자문 의견서 보관 및 이행현황 지속적 관리

관리부서와 사업부서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역할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모집, 구성 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운영규정 작성 및 배포, 개정 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파악용 관리대장* 작성, 보관 등
 - * 심의 개최 시, 사업명, 사업부서명, 담당자명, 심의 개최일, 개최장소, 참석자, 심의결과(원안의 결, 조건부, 재심의 등) 등
- 자문 개최 시, 사업명, 사업부서명, 담당자명, 자문 개최일, 개최장소, 참석자, 주요 자문의견 등

*관리부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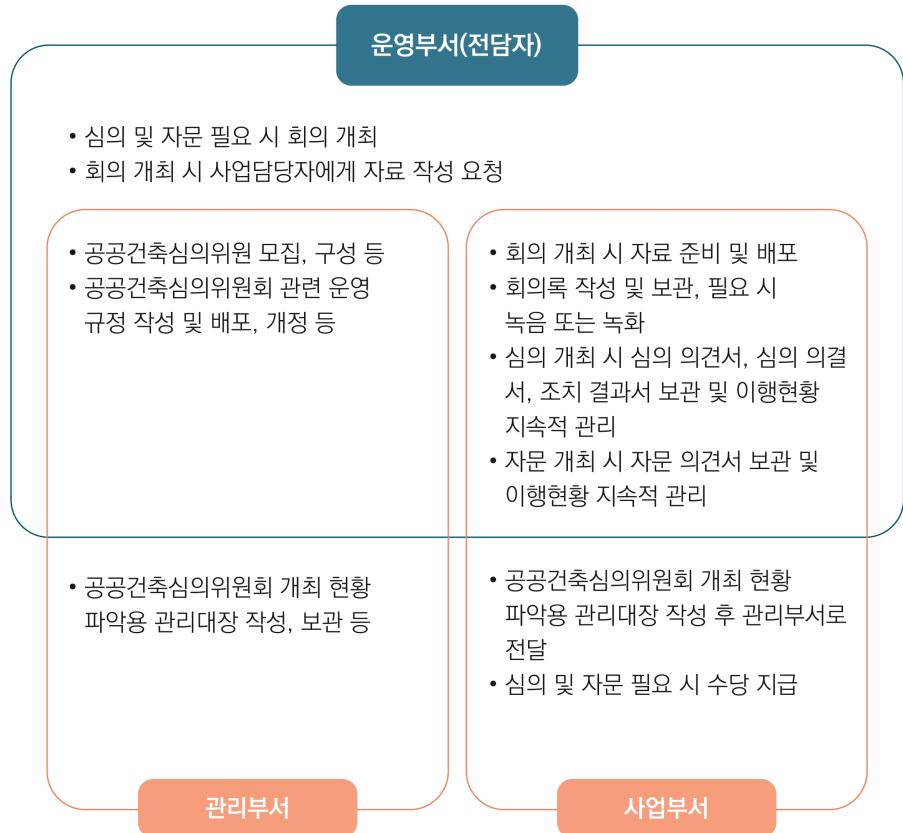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명단 및 운영규정 등을 관리만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부서를 칭함.

*사업부서 :

관리부서로부터 전달받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명단을 활용해 심의대상 사업 추진 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직접 개최하는 부서를 칭함.

사업부서의 역할

- 심의 및 자문 필요 시 회의 개최* 및 수당 지급
 - * 심의 개최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 개최 시 자료 요청 및 취합, 심의위원에게 배포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필요 시 녹음 또는 녹화
- 심의 개최 시 심의 의견서, 심의 의견서, 조치 결과서 보관 및 이행현황 지속적 관리
- 자문 개최 시 자문 의견서 보관 및 이행현황 지속적 관리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파악용 관리대장 작성 후 관리부서로 전달



공공건축 심의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촉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함



참고사항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시행 2020.06.01.)」(위원장 선출 및 권한)

직무 및 권한

- 위원장은 의성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위원회 소집권) 정례·수시회의, 현장조사 등
 - (위원회 회의주재) 개의·폐회 발언 허가 및 중지, 정족수확인, 표결 등
 - 관계공무원, 참고인의 회의장 입장 허가 및 퇴장 명령
 - 회의일정과 개회일시 결정 및 위원의 제척, 회피의 승인
 - 안건 심의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 및 설명 청취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성군에서 지명하며,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

간사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1명을 두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부서장 (혹은 팀장)으로 함

서기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를 보좌하기 위해 서기는 1명을 두되,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업무담당자(전담자)로 함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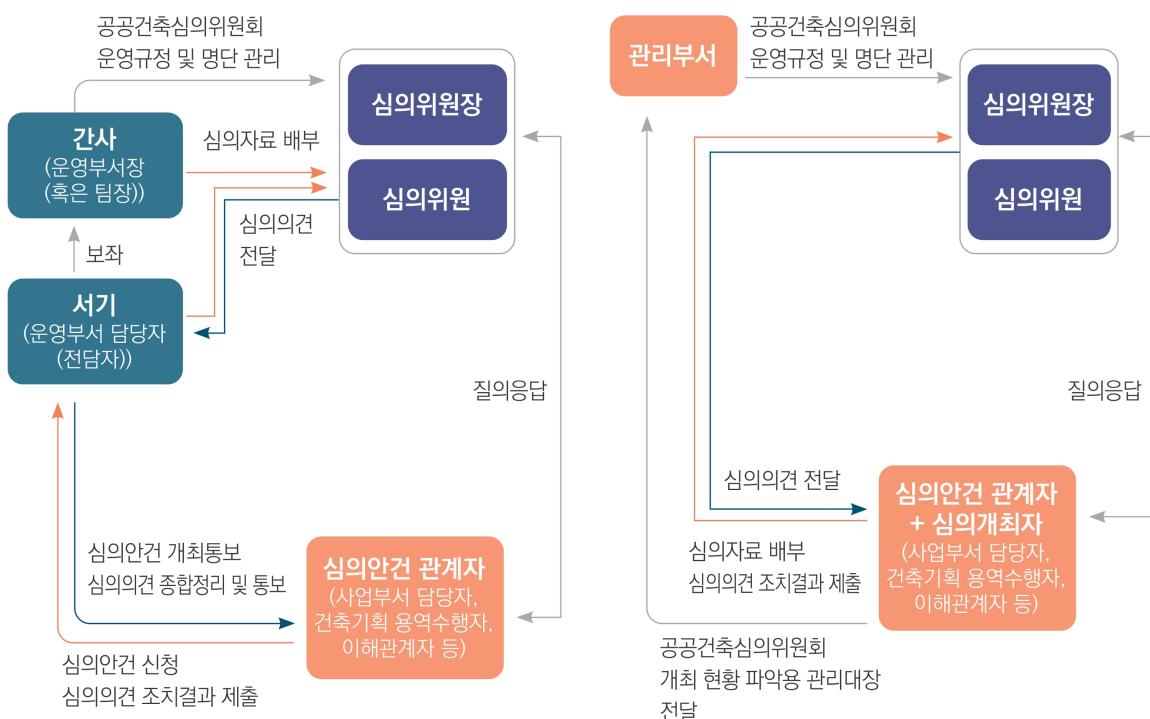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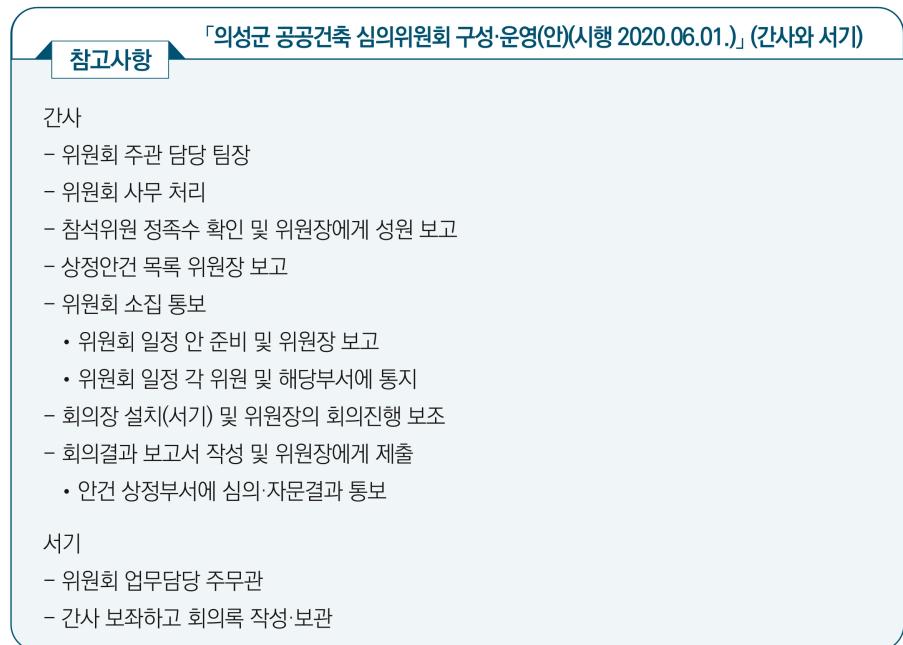
「영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시행 2020.10.14.)」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건축업무 담당으로 한다.

참고사항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 2021.4.16.)」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별도의 운영부서(전담자)가 있는 경우 주체별 관계도]

[관리부서와 사업부서로 운영하는 경우 주체별 관계도]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공공건축 가이드 04

III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따라 개최주기, 개최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제6항에 의거하여 개의 및 의결기준에 따라 운영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의거하여 심의대상 사업의 사전이행 절차에 따라 심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운영



개최주기 및 방식

개최주기

- 심의는 심의대상 사업 발생에 따른 요청 시 개최하되, 공공기관 여건에 따라 정기 혹은 수시 개최 가능. 다만, 여러 안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기 위해 심의 개최를 지연해서는 안 됨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시행 2020.7.)」 p.4.

참고사항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함
- 해당 월에 심의 신청 접수된 사업이 많아 1회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 2회 등으로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LH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시행 2021.8.)」 제6조(부의)

참고사항

-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안부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부여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 2021.7.26.)」 제10조(회의)

참고사항

- ① 위원장은 공공건축기획 업무부서 또는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거나 안건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개최방식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전 상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 개최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2010). “권익위, 공공기관 심의 · 의결위원회 사규 일제 정비”. 12월2일 보도자료. p.3.

참고사항

담당자가 고의로 회의록을 조작하거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략)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개의기준 및 의결기준

개의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재적위원 수 산정 시 제척·회피 등의 사유로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외

의결기준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가부 동수(可否 同數) 시 의결방식을 운영규정에 명시할 것을 권장함

의무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상략)

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략)



심의내용

심의대상	심의내용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재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사전 이행절차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건축물 등의 설계공모 진행 시)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의 경우*	별도 구성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자문 미수행		●		●
	별도 구성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자문 수행***	●		●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사전이행 절차** 의무대상	●		●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1억 원미만	●		●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외대상 용도*	●		●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인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7조제1항 참고)

**사전이행절차

-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건설기술 진흥법」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1항 참고)

***별도 구성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수행 사업

- 별도로 구성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사업의 경우 해당 자문의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할 수 있음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2.7.)」제14조제1항 참고)



심의절차(안) : ① 별도의 운영부서(전담자)가 있는 경우

주체	내용	시점(안)
심의안건 준비 및 신청	<p>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 자료(건축기획 자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의견 조치계획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설계지침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등)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접수/ 심의안건 검토 및 보완요청	<p>운영부서(전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부서(전담자)는 심의안건을 접수한다. •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제출 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의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심의안건 보완	<p>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을 요청받은 사업부서는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심의개최 최소 1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신속히 제시·처리해야 한다. 	D-10
심의안건 상정확정 및 개최통보/ 심의자료 배포	<p>운영부서(전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부서(전담자)는 심의안건 상정을 확정하고 심의위원장과 논의하여 심의 개최일 및 심의 개최방식을 확정한다. • 운영부서(전담자)는 심의 개최일 최소 7일 전까지 심의자료를 참석 예정 심의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D-7
심의자료 검토 (및 사전 검토의견 통보)	<p>공공건축심의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은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심의 개최일 이전 사전 검토의견 전달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 운영부서(전담자)에 전달한다. • 심의위원은 필요 시 추가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 검토의견 전달)	<p>운영부서(전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부서(전담자)는 심의위원의 사전 검토의견 발생 시 사업부서에 전달한다. 	D-3

주체	내용	시점(안)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p>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서는 심의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한 후 심의 개최일 1일 전 혹은 심의 개최 시 제출한다. 사업부서는 필요 시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한 심의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D-1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개최	<p>운영부서(전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부서(전담자) 주관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심의 안건 및 내용, 의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D-day
▼		
심의의견 종합정리 및 통보	<p>운영부서(전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부서(전담자)는 심의위원 개별 의견을 종합정리한 후 심의위원장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장의 검토가 완료된 종합의견 및 심의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 한다. 	D+5
▼		
심의의견 조치결과 작성 및 제출	<p>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서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설계공모 진행 시 설계공모 공고 전)에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14



심의절차(안) : ② 관리부서와 사업부서로 운영하는 경우

주체	내용	시점(안)
심의안건 준비	사업부서 • 심의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 자료(건축기획 자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조치계획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설계지침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등)를 구비한다.	
심의안건 상정확정 및 개최통보/ 심의자료 배포	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심의안건 상정을 확정하고 심의위원장과 논의하여 심의 개최일 및 심의 개최방식을 확정한다. • 사업부서는 심의 개최일 최소 7일 전까지 심의자료를 참석 예정 심의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D-7
심의자료 검토 (및 사전 검토의견 통보)	공공건축심의위원 • 심의위원은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심의 개최일 이전 사전 검토의견 전달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전달한다. • 심의위원은 필요 시 추가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심의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한 후 심의 개최일 1일 전 혹은 심의 개최 시 제출한다. • 사업부서는 필요 시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한 심의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D-1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부서 • 사업부서 주관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심의 안건 및 내용, 의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D+day
심의의견 종합정리	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심의위원 개별 의견을 종합정리한 후 심의위원장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D+5

주체	내용	시점(안)
심의의견 조치결과 작성 (및 제출)	<p>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서는 심의의견서를 통보받은 후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설계공모 진행 시 설계공모 공고 전)에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14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관리대장 작성	<p>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서는 심의 의견서, 심의 의결서, 조치 결과서를 보관하고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사업부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파악용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관리부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D+30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관리대장 보관	<p>관리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부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파악용 관리대장을 사업부서로부터 회신받아 보관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D+30



심의위원 심의 진행 시 제척·회피 사유

제척 사유

-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됨

의무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상략)

⑨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후략)

- 건축기획 업무 수행 업체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됨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중략)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 대표자 ·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 ·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 ·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 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심의안건 사업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공공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아산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시행 2020.4.6.)」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참고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중략)
4.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후략)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요강(시행 2020.4.29.)」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참고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除斥) 된다.
1. 위원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안건 대상인 공공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후략)

회피 사유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함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운영



개최주기 및 방식

개최주기

- 자문은 공공건축사업 추진 과정 상 필요 시 수시 개최

개최방식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 상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 개최 가능
- 사업대상지 방문이 가능할 경우 방문할 것을 원칙으로 함



자문절차(안) : ① 별도의 운영부서(전담자)가 있는 경우

주체	내용	시점(안)	
자문안건 준비 및 신청	<p>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자문안건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자문 요청할 사업 관련 자료(기본구상 자료, 건축기획 자료,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설계지침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등)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접수/ 심의안건 검토 및 보완요청	<p>운영부서(전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부서(전담자)는 자문안건을 접수한다. 운영부서(전담자)는 자문안건 사업 특성(건축행위, 용도, 주요 자문안건 등)을 고려해 자문을 수행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확정한다. 		
자문 방식 확정 및 통보/ 자문자료 배포	<p>운영부서(전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부서(전담자)는 자문을 수행하는 심의위원과 논의하여 자문방식(서면 혹은 대면) 및 일정을 확정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운영부서(전담자)는 자문회의 개최일(혹은 자문의견서 회신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자문자료를 자문을 수행하는 심의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D-7	
자문자료 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원은 자문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자문회의 개최)	운영부서(전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부서(전담자) 주관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사업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한 위원 명단, 자문안건 및 내용, 자문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문의견서 작성	공공건축심의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을 수행하는 심의위원은 자문안건 관련 자료 검토 (및 자문회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다. 	D-day
자문의견서 전달	운영부서(전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부서(전담자)는 심의위원이 작성한 자문 의견서를 사업부서에 전달 한다. 	



자문절차(안) : ② 관리부서와 사업부서로 운영하는 경우

주체	내용	시점(안)
자문안건 준비	<p>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자문안건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 자문 요청할 사업 관련 자료(기본구상 자료, 건축기획 자료,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설계지침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등)를 구비한다. 	
▼		
자문 수행 심의위원 선정	<p>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는 자문안건 사업 특성(건축행위, 용도, 주요 자문안건 등)을 고려해 자문을 수행할 공공건축심의위원을 확정한다. 	
▼		
자문 방식 확정 및 통보/ 자문자료 배포	<p>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는 자문을 수행하는 심의위원과 논의하여 자문방식(서면 혹은 대면) 및 일정을 확정한다. • 사업부서는 자문회의 개최일(혹은 자문의견서 회신일)로부터 최소 7일 전 까지 자문자료를 자문을 수행하는 심의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D-7
▼		
자문자료 검토	<p>공공건축심의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은 자문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문회의 개최)	<p>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 주관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사업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한 위원 명단, 자문안건 및 내용, 자문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자문의견서 작성	<p>공공건축심의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을 수행하는 심의위원은 자문 안건 관련 자료 검토 (및 자문회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다. 	D-day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관리대장 작성	<p>사업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는 주요 자문안건, 자문 의견서, 회의록 등을 보관하고 이행현황 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사업부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파악용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관리부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D+7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관리대장 보관	<p>관리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부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파악용 관리대장을 사업부서로 부터 회신받아 보관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D+14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공공건축 가이드 04

부록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현황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현황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총 200명
조사 기간	2022년 7월 18일부터 약 2주간
조사 기준일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1년)

- 조사내용은 크게 민간전문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의 현황으로 구성되며, 본 장에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내용만 소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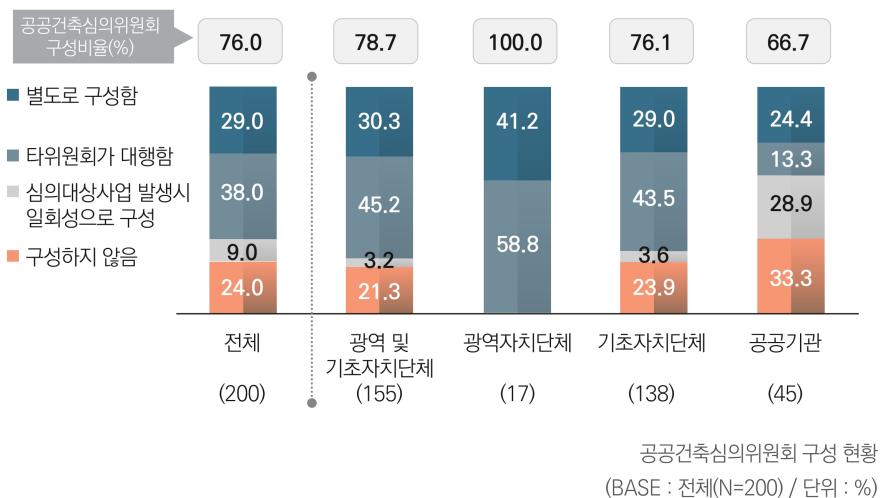
조사항목	조사내용	근거
민간전문가	운영 여부, 총 인원,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향후 운영계획, 운영부서 및 담당자	「건축기본법」 제23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대행 위원회, 총 인원, 위원장, 위원, 개최 횟수(연간), 심의 건수(연간), 향후 별도구성 계획, 운영부서 및 담당자, 운영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지역건축위원회	구성 여부, 총 인원, 위원장, 위원, 향후 별도구성 계획, 운영부서 및 담당자	「건축기본법」 제18조

- 응답자(소속기관)는 기초자치단체가 69%(138명)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22.5%(45명), 광역자치단체가 8.5%(17명)로 구성
 - 조사기간 내 응답을 완료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88개(38.9%), 공공기관이 69개(60.5%)임
 - 공공기관 조사대상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근거가 마련된 2019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사전검토 신청 이력이 있는 곳으로 한정함

구분	응답수: ①	비율(%)	조사대상: ②	미응답: ③ - ①
전체	200	100.0	361	161
광역자치단체	17	8.5	17	0
기초자치단체	138	69.0	226	88
공공기관	45	22.5	114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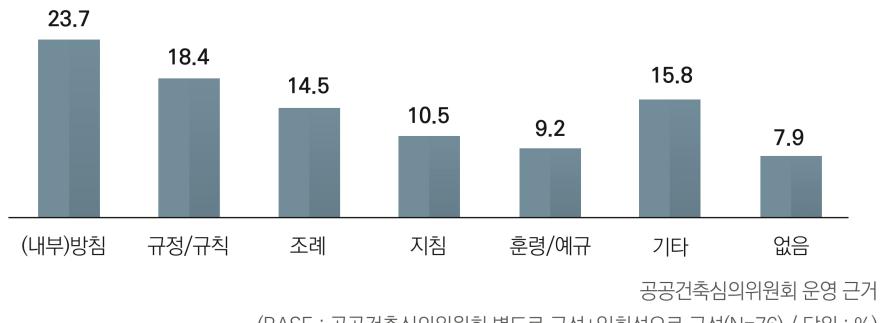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응답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76.1%가 구성, 공공기관은 66.7%가 구성함
 - 광역자치단체는 별도로 구성한 경우가 41.2%, 타 위원회 대행이 58.8%
 - 기초자치단체는 별도로 구성한 경우가 29.0%, 타 위원회 대행이 43.5%, 심의 대상 사업 발생 시 일회성으로 구성이 3.6%, 구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3.3%
 - 공공기관은 별도로 구성한 경우가 24.4%, 타 위원회 대행이 13.3%, 심의대상 사업 발생 시 일회성으로 구성이 28.9%, 구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3.3%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타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공공기관은 구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회성으로 구성한다는 응답(28.9%)이 다음으로 많았음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 근거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내부)방침 23.7%, 규정·규칙 18.4%, 조례 14.5% 순으로 나타났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9%
 - 광역자치단체는 조례가 42.9%로 가장 높았으며, (내부)방침 28.6% 순임
 - 기초자치단체는 (내부)방침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규정·규칙 및 조례가 각 13.3%로 나타남
 - 공공기관은 규정·규칙 29.2%, (내부)방침 16.7%, 지침 12.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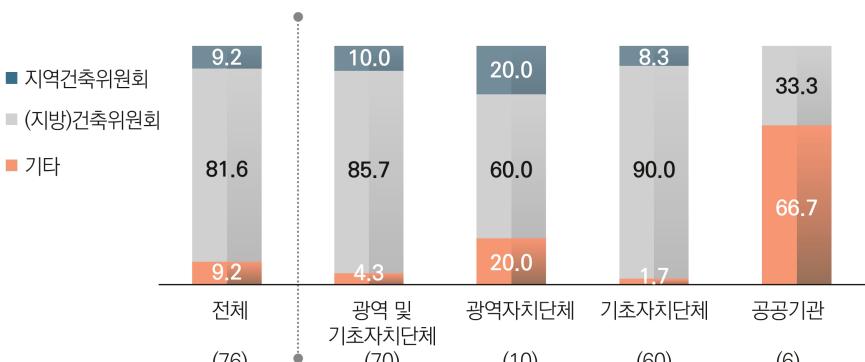


기관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BASE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별도로 구성+일회성으로 구성(N=76) / 단위 : %)

구분	사례수	(내부)방침	규정·규칙	조례	지침	훈령·예규	기타	없음
전체	(76)	23.7	18.4	14.5	10.5	9.2	15.8	7.9
광역자치단체	(7)	28.6	14.3	42.9	0.0	14.3	0.0	0.0
기초자치단체	(45)	26.7	13.3	13.3	11.1	8.9	17.8	8.9
공공기관	(24)	16.7	29.2	8.3	12.5	8.3	16.7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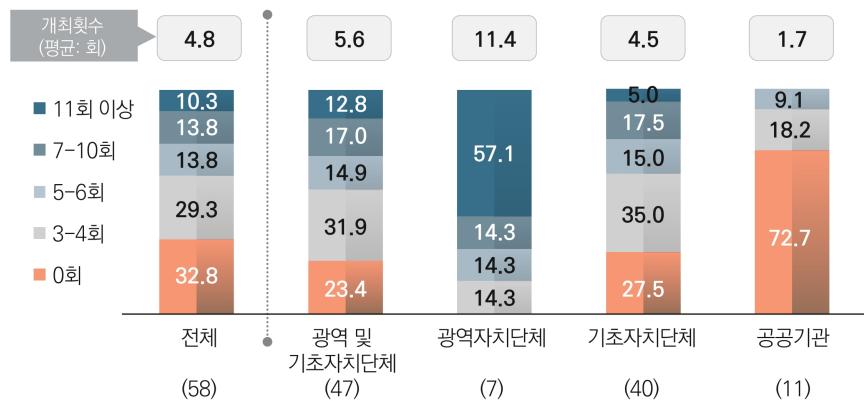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대행 위원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타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대다수는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건축위원회가 60%, 지역건축위원회가 20%, 기타 20%
 - 기초자치단체는 (지방)건축위원회가 90%, 지역건축위원회가 8.3%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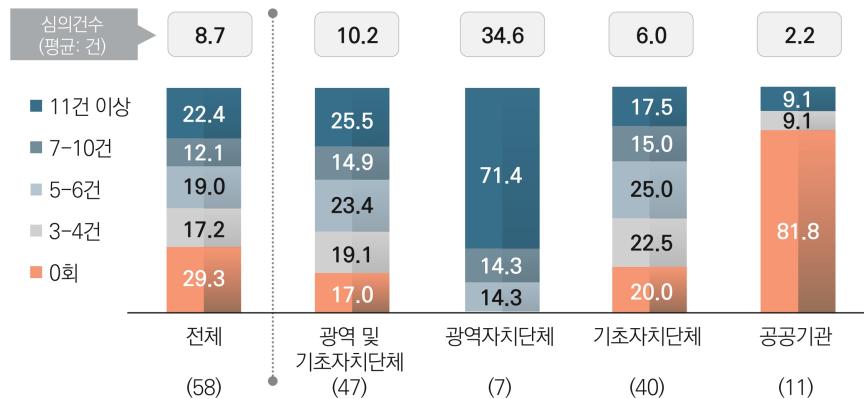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 (2021.07.01. ~ 2022.06.30.)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가 11.4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4.5회, 공공기관 1.7회로 나타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BASE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별도로 구성(N=58) / 단위 : 회,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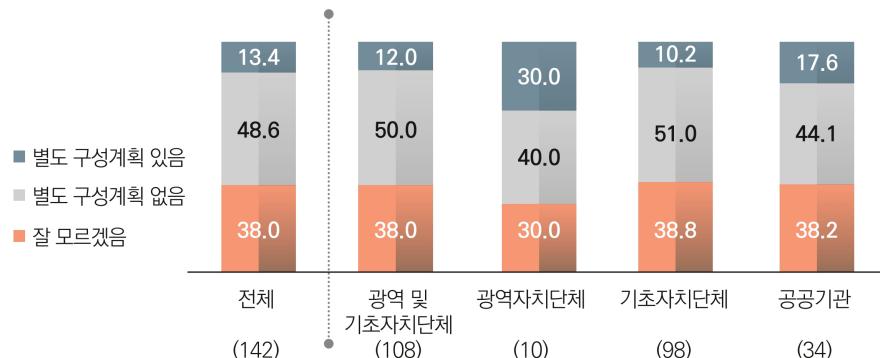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 (2021.07.01. ~ 2022.06.30.)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가 34.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6.0건, 공공기관 2.2건 순으로 나타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BASE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별도로 구성(N=58) / 단위 : 건, %)

향후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기관을 제외하고, 향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계획을 물어본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별도 구성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 별도 구성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광역자치단체가 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 17.6%, 기초자치단체 10.2% 순으로 나타남



향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BASE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별도로 구성 응답자 제외(N=142) / 단위 : %)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가이드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공공건축 가이드 04

부록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구성(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훈령·예규·규정 등)

현황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을 살펴봄
 - 운영 관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기관 홈페이지, 기관 방문을 통한 구득자료를 참고함
 - 공공기관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은 자치 법규(조례·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 등), 기관 규정, 내부방침 등으로 구분
 - 총 35개의 공공기관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다만, 3개 기관의 규정은 세부내용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
 - 그 중 8개 기관은 타 기준(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내 일부 조문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나머지 27개 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운영, 위원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종류	기관유형	합계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원청	공공기관
	합계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기준	조례	3	0	3	0	0
	규칙	1	0	0	1	0
	훈령	13	1	12	0	0
	예규	1	1	0	0	0
	규정	6	0	0	0	6
	방침	3	0	0	0	3
타 법령 내	조례	7	0	8	0	0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내용 구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은 크게 3장(총칙, 심의위원 위촉 및 해촉 관련 내용,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구분되며, 조문 개수는 최소 7개에서 최대 16개로 구성
 -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로 구성
 - **(심의위원 위촉 및 해촉)** 위원의 자격(선정방법), 임기, 위촉 및 해촉 등, 제척·기피·회피, 위원 후보군 선정 등으로 구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의 기능, 개최 및 운영, 심의신청, 자문회의, 소위원회, 심의 및 의결, 심의결과 조치, 심의수당,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의무, 의견청취, 비밀유지, 간사, 운영세칙 등으로 구성
 - **(그 외 내용)** 민간전문가 자문

총칙	심의위원 위촉 및 해촉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정의-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의 자격, 선정방법, 임기- 위원의 선정, 위촉 및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 후보군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기능·구성- 위원회 개최·운영- 심의신청- 자문회의- 소위원회- 심의 및 의결- 심의결과 조치- 심의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의무- 의견청취 등- 비밀유지- 간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운영규정 수립 기관 목록(‘22.6.30.기준)

구분	명칭	형식	제정일자(빠른순으로 정리)
국가기관			
우정사업조달센터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2021.04.20
조달청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2021.07.27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서	방침	2020.03.03
한국폴리텍대학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규정	2020.04.24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요강	방침	2020.04.29
국가철도공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규정	2020.05.14
인천항만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지침	지침	2020.05.1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방침	2020.06.12
대한체육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규정	규정	2020.07.29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규정	2021.01.06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방침	2021.03.01
울산과학기술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규정	2021.03.09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방침	2021.08.
광역자치단체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0.01.13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2020.03.10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	방침	2020.0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2020.03.26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방침	2020.0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2020.05.27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방침	2020.06.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2020.07.3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2021.02.19

구분	명칭	형식	제정일자(빠른순으로 정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2021.05.14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2021.09.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2021.12.31
기초자치단체			
아산시 (충남)	아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0.04.06
의성군 (경북)	의성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방침	2020.04.23
구미시 (경북)	구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0.08.05
춘천시 (강원)	춘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0.08.13
영천시 (경북)	영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0.10.14
청주시 (충북)	청주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1.01.08
대구 수성구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1.01.11
홍성군 (충남)	홍성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1.03.15
이천시 (경기)	이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1.04.07
광명시 (경기)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2021.04.16
시흥시 (경기)	시흥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1.07.05
부여군 (충남)	부여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2021.07.26
광주 서구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2.01.10
평택시 (경기)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2022.03.02
서산시 (충남)	서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2022.03.10
김포시 (경기)	김포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2022.09.21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공공건축 가이드 04

부록

3. 관련 서식[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현황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은 심의를 개최하기 전, 후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으로 구분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건축 사업 규모(설계비)별 양식을 구분하여 심의신청서를 제공
 - 공공건축 심의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이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일 경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서식 종류	단계	심의 전	심의 중	심의 후
청렴서약서	O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O			
제척·회피사유 해당여부 확인서(신청서)	O			
심의 신청서	O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등록신청서	O			
위촉장	O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서	O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O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통지서	O			
심의안건	O			
심의 평가표	O			
심의(자문) 의견서	O			
집계표	O			
심의의결서	O			
위원 서명록	O			
회의록	O			
심의결과서 및 조치사항		O		
재심의 사유서		O		

운영규정 상 제공 서식(안)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심의 및 자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식을 포함할 것을 권장함
 - 심의(자문) 전 단계: 심의(자문)신청서
 - 심의(자문) 단계: 심의(자문)의견서, 심의 종합 의견서, 집계표, 심의의결서
 - 심의(자문) 후 단계: 심의 결과 및 조치계획



주요 서식(샘플)

심의(자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 심의			□ 자문		
사업명				사업부서	
부지위치					
건축구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증축면적)	총수 (지하/지상)	주용도
	m^2	m^2	(m^2)	/	
예산	(국비 도비 시비)		주정설계비	원	
사전검토 및 관련 심사	(예비) 타당성조사		여() 부()	조사기관()	
사전검토 및 관련 심사	사업계획 사전검토		여() 부()	검토기관()	
주요 심의(자문) 안건 요약	* (심의) 설계용역 과업내용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사항 등 * (자문)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부서장: (서명 또는 인)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공통):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건축기획 자료 (해당시):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공공건축지원센터)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자료 7.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업명					
신청기관	주관부서				
부지위치					
건축구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주용도		사업규모	부지면적 : m^2 연면적 : m^2 (증축 · 대수선 : m^2)	
예산	총사업비	총	원	원	
		국비 :	원		
		도비 :	원		
시비 :	원				
사전검토 및 관련 심사	(예비)타당성조사		여() 부()	조사기관()	
	사업계획 사전검토		여() 부()	검토기관()	
신청기관 심의요청 인건 요약	(건축기획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등 사업의 적정성 여부(수요·규모·일자·예산·기간·관리 등) 배치 및 공간계획 방향 등 사전검토 등 심사 결과 반영 여부 				
위와 같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p>첨부서류</p> <p>(공통) :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세부 자료(서식1, 2 중 해당사업 선택 작성), 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3. 건축기획 자료</p> <p>(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공공건축지원센터),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p>					

심의 의견서, 심의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심의 의견서

○ 사업명:

○ 전문분야:

○ 심의의견

심의안에 대한 의견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심의위원: (인)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_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현장

적정성 심의 평가표

건명:

안건: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공모 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상기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정성 심의합니다.

구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비고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반영 적정성				
2	설계공모 지침서 적정성				“○ 표시”
종합 평가					

1) (적정)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내용이 적정하나, 일부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크게 실추시킬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보완 후 재심사)

2021

심의위원: (서명)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집계표

[서식 5-1]_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 대상 현장

집 계 표

전명:

안건 1: 건축 기획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구 분	위원명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비 고
1	위원1				
2	위원2				
3	위원3				
4	위원4				
5	위원5				
합 계					“○ 표시”

안건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적정성에 관한 사항

구 분	위원명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비 고
1	위원1				
2	위원2				
3	위원3				
4	위원4				
5	위원5				
합 계					“○ 표시”

2021. . .

작성자 소속 우정사업조달센터 설계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우정사업조달센터 설계과 직급 성명 (서명)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심의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 ○○○○년 제○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번호	안건명	심의결과				심의 의견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부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함.

20

시흥시장 귀하

[서식 6]_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현장

의 결 서

의결 일자
2021. . .()

건명:

의결사항

○○우체국의 공공건축심의 결과

안건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적정 / 조건부승인 / 부적정),

안건2. 설계공모 지침서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적정 / 조건부승인 / 부적정)으로 의결합니다.

심의위원 확인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4호]

심의의결서

○ 사업명 :

○ 안 건 : 위 사업에 대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사전검토 의견 반영 및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상기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심의위원 ()인의 심의의견서를 취합한 결과, '원안채택'()인,
- '조건부채택'()인, '재심의'()인으로 위 사업의 건축기획 심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으로 의결함

붙임 1. 심의의견서 1식.

2. 지적사항 1식.

202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별지 제4호] 심의의결서

심의의결서

○ 사업명 :

○ 안건 : 위 사업에 대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사전검토 의견 반영 및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상기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원안채택’()인, ‘조건부채택’()인, ‘재심의’()인으로 위 사업의 건축기획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으로 의결함

붙임 : 심의의견서

202 . . .

위원: 소속	성명	서명

한국폴리텍○대학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3-3] (조건부채택 / 재심의) 심의의결서 (제9조 제3항 관련)

(조건부채택 / 재심의) 심 의 의 결 서

안건명 : 인천항 ○○ 설계용역 공공건축 심의

상기 안건에 대한 조건부 채택 재심의 심의의결서를 다음(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내용)

년 월 일

인천항 ○○ 설계용역
인천항만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심의위원 :	(인)

심의 결과 및 조치계획

[별지 제4호서식]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조치계획

□ ○○○○년 제○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사업명 :

구분	심의의견(조건사항)	조치계획	반영여부
설계공모 지침서	○		반영 / 미반영
과업 지시서	○		반영 / 미반영
기타	○		반영 / 미반영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사업명:

의결결과:

구분	심의의견(조건사항)	조치계획	반영여부
			반영 / 미반영
			반영 / 미반영
			반영 / 미반영

[서식 7]

공공건축 심의결과 조치사항

□ 건명: OO우체국 건립공사 공공건축심의

검토 항목	심의위원 검토 의견	검토의견 반영여부	조달센터 조치사항	해당위원
부지특성				
예산				
사업범위				
설계기간				
주차계획				
배치계획				
입면계획				
세부계획				

공공건축 가이드 0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가이드 2022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펴낸이 이영범

엮은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홈페이지 www.auri.re.kr(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www.npbc.or.kr)

디자인 (주)케이에스센세이션

비매품

ISBN 979-11-5659-392-8

-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공간연구원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www.auri.re.kr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npbc.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가이드 2022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4

비매품/무료



9 791156 593928
ISBN 979-11-5659-392-8

